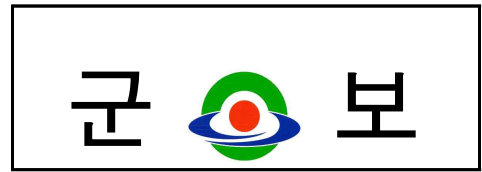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4호 2023. 6. 29.(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935호)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예천군 보건소 공고 제2023-2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예천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2조~안 제3조)

- 지원 대상 :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예천군민
- 예방접종 비용 및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

다. 예방접종 지원절차(안 제4조)

- 신청자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 방문,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
- 접종 기관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라.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해지 등(안 제5조~안 제7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 및 계약 조건 미준수시 계약 해지

마. 지원비 환수(안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2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안 제9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신청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예천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hlekwjd335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3) 팩스 : 054-650-64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전화: 054-650-8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 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계약목적		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위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 업체명 : _____ [] 미사용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위탁계약 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4.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5.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예천군-○○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예천군수

직인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 예고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예천군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 및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학교, 아동, 비만, 아동비만예방사업에 대한 용어 및 정의 규정

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 사업 추진 대상 : 아동 대상 시설, 학교
- 예천군수는 비만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및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 활용 가능

4. 조례제정(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예천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c122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팀(전화: 054-650-8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대상 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강사) 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
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

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12. 22.]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
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비만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 아동비만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5조)
-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아동비만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물품 구입,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10,000천원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안남기(054-650-6470)